

성 남 ~ 강 남 고 속 도 로 민 간 투 자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7.



국토교통부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5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5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5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2.4	대안의 설정	9
2.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5
2.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7
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0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단절된 간선도로망 연결

-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서울시 강남지역과의 단절구간 연결
 - 위례신도시 등 동남권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비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14년) 반영
- 간선도로 교통수요의 적절한 분산
 - 양재대로, 분당내곡 및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지정체 완화
 - 운행거리 단축 및 교통지정체 해소와 차량배출가스 저감

1.1.2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 직접 연결
 - 서울 대치, 개포, 일원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로 교통편의 향상

1.1.3 효율적 공간활용 입체도로

- 첨단기술 도입
 - 첨단ITS 도입 및 스마트톨링시스템 설치
- 지하공간을 활용한 효율적 토지이용
 - 장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심도 지하터널 설치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비 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9조에 따른 <u>민간 부문 제안사업</u>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 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 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u>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u> 또는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 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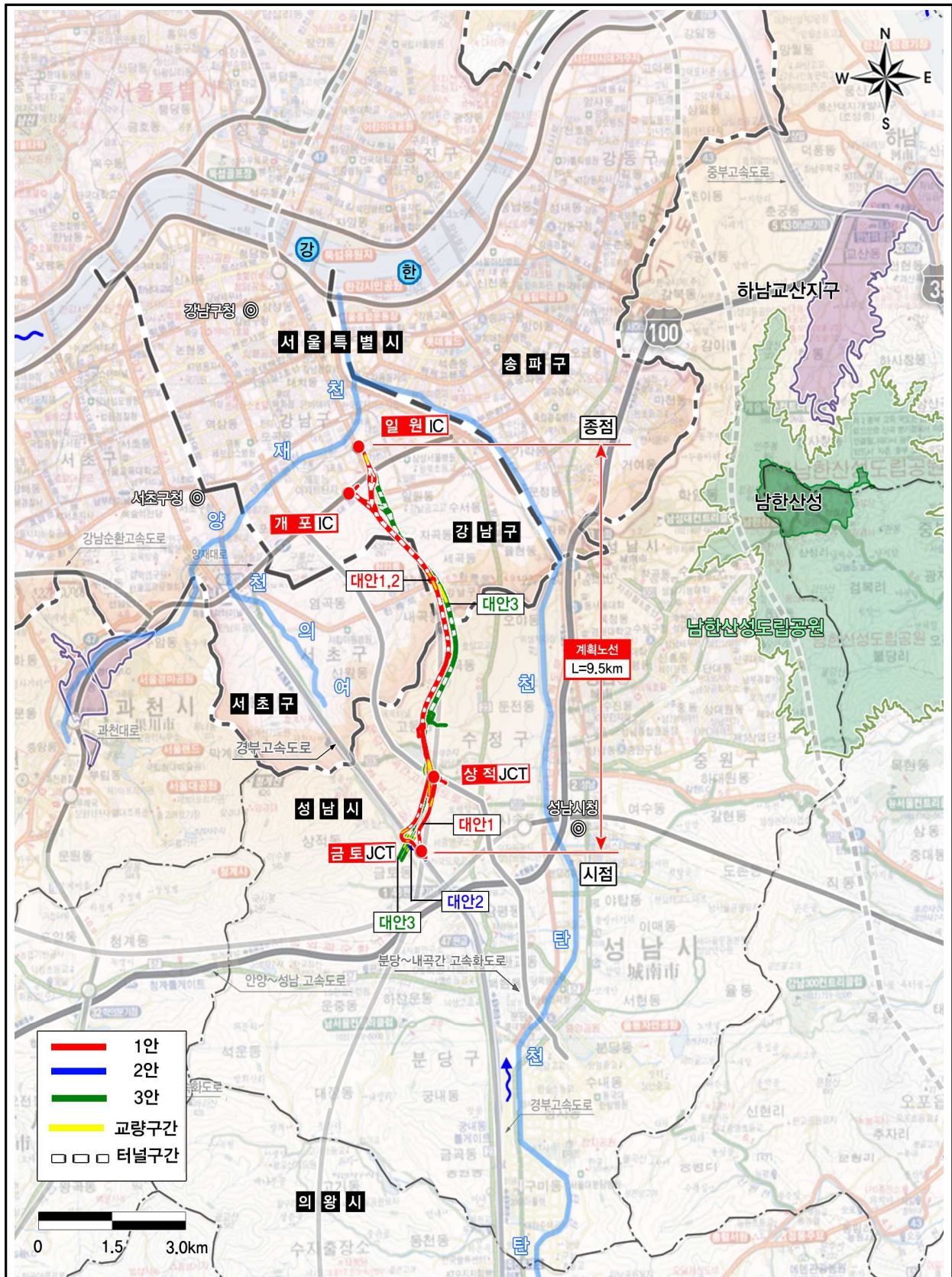
〈표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 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1.4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공간적 범위
 - 시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JCT)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일원IC), 개포동(개포IC)
- 시간적 범위
 - 공사기간 : 2026년 01월 ~ 2030년 12월(총 60개월)
 - 개통연도 : 2031년
 - 목표연도 : 2060년(30년 운영)
- 사업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계획시행자 : (가칭)남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계획의 규모

구 분	계획의 내용
연장	• 본 선 : 9.5km
설계속도	• 100km/hr
차로	• 4차로(왕복)
터널	• 본 선 : 7,007m / 7개소
교량	• 본 선 : 2,528m / 13개소
지하차도	• BOX : 277m / 2개소 • U-TYPE : 201m / 2개소
출입시설	• 4개소 (JCT : 2개소, IC : 2개소) • JCT : 금토, 상적 • IC : 개포, 일원
영업소	• 1개소



(그림 1-1)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년 4월 26일 ~ 5월 16일
- 결정사항 : 대상지역 설정,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2.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각 지자체별 환경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에서 ‘주요 동물(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의 이동통로 보전’을 환경보전목표로 추가 설정하였음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

분야	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가) 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자연도 1등급 보전 등 ○ 주요 동물의 이동통로 보전	○ 자연환경 보전
	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백두대간 및 정맥 보전 등	○ 생태축 보전
	③ 자연경관의 보전	○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 경관훼손 최소화
	④ 수환경의 보전	○ 수질환경기준항목 설정 ○ 오염총량 등	○ 현황농도 유지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①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항목 설정 등	○ 현황농도 유지
	②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관련성 적음
	③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획수립	○ 재활용 목표설정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등	○ 연계성 검토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대상지역의 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설정하였음
- 평가항목은 계획의 특성 및 계획노선 주변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비 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자연경관의 보전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표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지역	대상지역 설정사유
가) 자연 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 공사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의 교란 및 변화 예상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깎기 및 쌓기로 인한 지형변화 · 학술적·문화적,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 여부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산림축의 훼손 여부
	(3) 자연경관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지형훼손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판단 가능지역
	(4)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하천횡단 구역 및 수용하천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토공사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 영향 · 운영시 비점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에 의한 영향
나) 생활 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노선 및 인근 지역의 광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타 항목의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의 지역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 ·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노선 및 터널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토양오염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예상
		소음·진동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영향 ·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발생소음에 따른 정온시설 영향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및 적정성 검토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노선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등의 발생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8

2.4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선정

-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계획의 대안은 계획비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와 수립하였을 경우), 입지,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선정함
 - 평가준비서 제출시 대안 : 전체 노선에 대한 비교 노선 1개, 시·중점부에 대한 비교 대안 제시
 - 협의회 의견 반영 대안 : 전체 노선에 대한 비교 노선 3개, 유지관리사무소 노선별 대안 제시

〈표 2-4〉 대안의 종류

종류	선 정 방 법	선정여부
계획 비교	○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수단·방법	○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수요·공급	○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표 2-5〉 대안의 선정 결과

종류	선정기준	선정 사유	
계획 비교	계획수립 여부	대안1	○ 계획 수립 (Action)
		대안2	○ 현 상황을 유지, 계획 미수립 (No Action)
입지	계획노선 선형 조정 비교 및 유지관리사무소 위치	대안1	○ 성남금토지구 우회, 한솔마을(아파트)을 우회 노선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성남방향) 입지
		대안2	○ 성남금토지구 통과, 한솔마을(아파트)을 우회 노선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성남방향) 입지
		대안3	○ 성남금토지구 통과, 한솔마을(아파트)을 하부 통과 노선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강남방향) 입지
수단 · 방법	경제성 및 운행 안전성	대안1	○ 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를 활용한 노선
		대안2	○ 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를 활용한 노선
		대안3	○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를 활용한 노선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

○ 계획 수립시(Action) 및 계획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 수립시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장래 유발 교통량 및 현 교통정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 수립시(Action)인 대안 1을 선정하였음

〈표 2-6〉 계획비교 대안의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계획 수립시(Action))	대안 2(계획 미수립시(No Action))
사업 내용	○ 계획노선으로 기존 도로 교통량 분담 및 향후 장래 교통수요량 대비	○ 기존 도로를 이용하므로 환경현황 변경 없음
장점	○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 형성 ○ 간선도로 교통수요의 적절한 분산 ○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교통수요량 대비 ○ 교통 지정체 완화 ○ 도심통과 교통수요 전환으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	○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형 및 생태계 변화 미약
단점	○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 지형 및 생태계 영향 발생	○ 차량지정체로 차량배출가스 증가 ○ 지역 균형발전 저해
선정	◎	

2) 입지

○ 계획노선 선형조정 비교를 통한 입지 대안 비교·검토 결과, 대안1을 선정하였음

〈표 2-7〉 입지 대안의 비교·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개요	○ 성남금토지구 우회 ○ 한솔마을(아파트)을 우회 노선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성남방향)	○ 성남금토지구 통과 ○ 한솔마을(아파트)을 우회 노선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성남방향)	○ 성남금토지구 통과 ○ 한솔마을(아파트)을 하부 통과 ○ 유지관리사무소 - 성남시 고등동(강남방향)
장단점	○ 성남금토지구 저축배제 및 고산터널 양측으로 일방향 터널 설치 ○ 금토영업소와 충분히 이격된 고등IC를 활용한 상적JCT 계획으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 한솔아파트 우회 통과로 터널내 배향곡선 발생(최소곡선반경 R=1,000m) - 한솔아파트 우회로 민원 최소화 ○ 유지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지형훼손 최소화 -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측 통과로 구조물 최소화	○ 성남금토지구 일부 통과 및 고산터널 우측으로 양방향 터널 설치 ○ 금토영업소와 충분히 이격된 고등IC를 활용한 상적JCT 계획으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 한솔아파트 우회 통과로 터널내 배향곡선 발생(최소곡선반경 R=1,000m) - 한솔아파트 우회로 민원 최소화 ○ 유지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지형훼손 최소화 -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측 통과로 구조물 최소화	○ 성남금토지구 일부 통과 및 고산터널 양측으로 일방향 터널 설치 ○ 금토영업소 유출부 용인→서울방향 3지분류(경부, 용인서울, 성남강남)로 운전자 혼란 예상 ○ 대모산터널 내 배향곡선 배제로 평면선형 양호 및 구조물 연장 최소화 - 한솔아파트 하부 터널 통과(H=55m)로 민원 예상 ○ 유지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지형훼손 최소화 - 용인서울고속도로 동측 통과로 구조물 과다 발생
공사량	○ L=9.5km/4차로 ○ 2차로터널 : 5개소/5,377m ○ 1차로터널 : 4개소/2,671m	○ L=9.5km/4차로 ○ 2차로터널 : 6개소/5,864m ○ 1차로터널 : 2개소/1,204m	○ L=9.5km/4차로 ○ 2차로터널 : 5개소/4,934m ○ 1차로터널 : 4개소/3,290m
선정	◎		
선정사유	○ 대안2는 성남금토지구 저측으로 관계기관협의를 곤란하며, 대안3은 대모산터널 직선화로 터널연장은 최소화하였으나, 성남금토지구 저측 및 일원동 한솔아파트 하부 통과로 민·관원이 예상되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동측통과로 구조물이 과다 발생함 ○ 따라서, 성남금토지구 및 한솔아파트 우회로 민·관원을 최소화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측통과로 구조물을 최소화한 대안1을 선정함		

3) 수단·방법

- 계획노선 경제성 및 운행 안전성 비교를 통한 수단·방법 대안 비교·검토 결과, 대안1안을 선정하였음

〈표 2-8〉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개요	○ 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를 활용한 노선		○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를 활용한 노선
장단점	○ 경부고속도로 전용 2차로 연결로 계획(금토JCT)으로 경제성 향상 ○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와 충분히 이격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를 활용한 상적JCT 계획으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 오산방향 연결로의 성남금토지구 미 저축으로 관계기관 협의 원활	○ 경부고속도로 전용 2차로 연결로 계획(금토JCT)으로 경제성 향상 ○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와 충분히 이격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고등IC를 활용한 상적JCT 계획으로 운전자 혼란 최소화 ○ 오산방향 연결로의 성남금토지구 저축으로 관계기관 협의 곤란	○ 금토JCT와 상적JCT간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접속을 위한 4차로 연결로 계획 ○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 유출부(용인 ➡ 서울방향)에서 3지분류(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본사업도로)로 운전자 혼란 예상 ○ 오산방향 연결로의 성남금토지구 저축으로 관계기관 협의 곤란
공사량	○ 터널 : 1개소/475m ○ 교량 : 8개소/2,374m	○ 터널 1개소/475m ○ 교량 : 8개소/2,374m	○ 터널 5개소/2,734m ○ 교량 : 8개소/2,150m
선정	◎		
선정사유	○ 대안1,2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전자가 금토영업소를 통과 후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2방향에 대한 인지반응으로 진행경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대안3은 경부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더불어 본사업노선을 포함하여 3방향에 대한 인지반응으로 진행경로에 대한 운전자 혼란이 예상됨 ○ 따라서, 성남금토지구를 저축하지 않아 관계기관협의를 원활하고,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1을 선정함		

〈표 2-9〉 대안별 주요내용

구 분	1안	2안	3안 (금회 추가)	비고
총 연 장	9.5km	9.5km	9.5km	
설 계 속 도	100km/hr			
차 로	4차로(왕복)			
교 량	2,528m/13개소	2,673m/12개소	3,524m/12개소	
지 하 차 도 (Box-type)	277m/2개소	277m/2개소	277m/2개소	
지 하 차 도 (U-type)	201m/2개소	201m/2개소	201m/2개소	
터 널	7,007m/7개소	6,027m/6개소	7,264m/9개소	
유 출 입 시 설	4개소 (JCT:2, IC:2)	4개소 (JCT:2, IC:2)	4개소 (JCT:2, IC:2)	—
선 정 안	◎			

2.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2.5.1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서면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음

〈표 2-10〉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구 분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수립, 도로노선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동·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변화 예상
			대기질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깎기 및 쌓기에 의한 비산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교통량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방안 검토
			토 양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교통량 이동에 따른 소음 영향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계획수립 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2.5.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0호」를 참고하였음
- 조사는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를 활용하겠음
- 동·식물상 및 환경질 조사는 1회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노선의 확정 및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계절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 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2-11〉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동물상 현황, 담수생물상 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 에 대한 영향 검토 ○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 섭에 따른 영향 검토 ○ 토사유출에 따른 담수생물상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지형분석, 특이지형 및 지질노두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여부 검토 ○ 주요 생태축 보전방안 검토
	자연경관의 보전	①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조사내용 : 하천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하천횡단구역 및 수용하천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터널폐수 발생 등에 의한 영향 검토 ○ 운영시 점·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계속〉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영향예측 방법
생 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인근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 기상연보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대기오염도 현황,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오염 물질에 대한 발생량 산정 및 영향 검토
		온실 가스	①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토양	①조사내용 : 토양오염원, 토양오염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공사시 발생하는 토양 오염물질 검토
		소음 진동	①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반경 500m 이내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계획의 시행시 환경기초 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 등 발생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종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 계획시행 전·후 토지 이용 변화 검토

2.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6.1 주민 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6.2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계획노선 통과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지자체 관내 공람장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람장소는 주관부서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고 및 공람 내용 게시
 -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나.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공람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설명회 장소는 주관부서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는 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 가능)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 략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

〈표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국토교통부	과장	정00	계획수립기관 지명
2	위 원	국토교통부	시설사무관	이00	계획수립기관 지명
3		환경부	행정사무관	연00	협의기관 지명
4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박00	협의기관 추천
5		강남구 환경과	지방환경주사	김00	관할 지자체 공무원
6		성남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장	최00	관할 지자체 공무원
7		(주)유연이앤씨	대표	이00	관할 지자체 추천 민간전문가
8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윤00	관할 지방환경관서 추천
9		성남시	주민	이00	주민대표
10		환경영향평가사회	회장	신00	환경영향평가등 민간전문가
11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민00	시민단체

2.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평가 시 상·하위 및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포함)과의 연계성·부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구체적인 관련 근거자료도 첨부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평가협의회에서 중점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것을 심의·요청한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 목표는 원칙적으로 정량적으로 설정 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안은 계획 수립 경위 및 사유, 대안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구상안의 내용 및 토지이용계획표 등을 기재하여 제시하여야 함 4. 대안 ○ 본 계획 고속도로의 필요성·타당성을 상위 도로망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도로연장 및 계획, 장래 교통량 추정,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별도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마을회관 게시판·현수막 등과 같은 의견수렴 계획 추가 가능 7.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 제1호 나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2.12.12.)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3.1월)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2023. 5. 16.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이 대부분 터널 또는 교량으로 구성되어 대안 노선 평가 시 시점 및 종점부에 국한되어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노선 전체에 대한 대안노선 평가를 수행하여 친환경적 도로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사업노선의 대안에 대하여 시점부 인근의 주변 고속도로 접속부 및 종점부 인근 공동주택 주변에 대해서만 기술한바 전체 노선의 대안에 대해 평가가 필요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5. 15.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기존 양재대로 교통량에 추가로 개포IC로 차량 유입 시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도가 증가한 여지가 있으나 일원IC로 입·출구를 일원화 하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한솔마을(아파트)등 주택가를 우회하는 노선 추진 필요 ○ 개포IC 구간 신설을 자제하고 일원IC로 일원화하여 대기질 오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의 보전 부분 공사 시 절성토 최소화 및 발파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예측 검토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자연환경의 보전 부분 공사 시 절성토 최소화 및 발파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 예측 검토 2023. 5. 16.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과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 대기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별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검토 할 것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안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고 ○ 현재 제안하고 있는 계획 노선 이외에 그간 검토하였던 비교노선 중 현재 제안하고 있는 노선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비교 검토 자료 제시 ○ 이용자 안전성 의 성남시 통과지역의 지형적 조건과 교통량 및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대안 제시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평가항목, 범위 등을 확대할 것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주민의견 수렴식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이용자 안전성 의 성남시 통과지역의 지형적 조건과 교통량 및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대안 제시 필요 ○ 성남시 구간에서는 녹지지역 비율이 높으므로 생태축 단절과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의 훼손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우회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 5. 16.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 - 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향후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타당하나 도시지역 자연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한솔마을, 현인마을 등 주거밀집지 통과구간의 민원발생에 따른 부작용을 저감하기 위한 속도가 병행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 9.5km중 약 92%가 터널 및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내 가용토지의 감식은 최소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
- 대안
 - 입지 대안2는 한솔마을아파트 하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하 40m이상 굴착이 필요하고 통과후 연결노선과의 접점을 위한 급격한 경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노선이 기존 도로와 연계되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운영 시 소음예측과경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주된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등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알리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5. 10.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본 의견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CT)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일원IC) 및 개포동(개포IC)을 연결하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으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 토지이용 구상안
 - 별도의견 없음
- 대안
 - 별도의견 없음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질) 계획노선 9.5km 중 약 6km가 산지 및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변화, 터널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공사(발파 포함) 및 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대기, 소음·진동 등 누적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주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의견 없음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별도의견 없음

2023.05.10.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토지이용 구상안
 -
- 대안
 - *공로용(공로 JCT)이 사전인제 공로용에서 전철원이 안된 경우 사법률 재검토 하여 주십시오*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주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가급적 공사 시기를 앞당겨 줘고 개통시도 많았겨 위해서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공로용 판공제 제3 레코와 병행의 공로 수로가 많은 만큼 공로용에서 성남강남고속도로 2023.5.10.를 전철로하여 줘야 함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평가준비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선정 등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 대안
 - 운영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선정은 적정함.
 - 환경현황조사시 거짓·부실조사로 인한 불합리한 영향예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동식물상 현지 조사시 해당종의 출현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현장 공사인원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수처리된 계획노선 주변 하수관거원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의견 없음.
-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5. 8.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1 자연환경의 보전의 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항목의 환경보전목표에 ‘포유류, 양서 파충류 등 주요 동물의 이동통로 보전’을 추가하였으면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에서 ‘이동성이 있는 생물의 경우 이동통로 훼손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다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대안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항목에서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의 이동통로 단절로 인한 환경영향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예측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좋겠음. ○ 식생, 동물이동로 단절구간은 기존 문헌 자료분석 이외에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4. 30.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공 란
--	---